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04
----------	-----

제출연월일 : 2007. 3. 30.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조직개편 및 사무위임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신설·조정·삭제하고,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부서의 명칭을 행정지원과에서 인력개발과로 조정함(안 별표 1).

나.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부서 및 수임기관의 명칭을 조정하고, 개별법령의 개정에 맞춰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조정하고자 함(안 별표 2).

다. 조직개편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및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조정하고, 권한이양(장관→시장 또는 시장→구청장)된 위임사무는 신설 또는 삭제하고자 함(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2) 입법예고 : 2007. 2. 6 ~ 2. 15 / 접수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장 소속기관장 및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대전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대전광역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임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고 대전광역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수임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수질관리과관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시민음부즈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외의 부분중 “감사관실”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8조중 “감사관실에서”를 “감사관이”로 한다.

②대전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실국장, 소방본부장”을 “실·국·본부장”으로, 제6조제2항중 “기획관실”을 “시정조정업무”로 한다.

③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중 “판·담당관·과장”을 “담당관·과장·팀장·실장·단장”으로, 제6조중 “담당관·과장”을 “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중 “혁신분권담당관실”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④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담당관·과장”을 “담당관·과장·팀장·실장·단장”으로 한다.

⑤대전광역시행정법규상담실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6조제2항중 “법무담당관실”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7조중 “법무담당관”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법무담당관과 법무담당관실 담당사무관”은 “법무통계담당관 및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중 “담당관·과”는 “담당관·과·팀·실·단”으로 한다.

⑥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및 제8조중 “법무담당관”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⑦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중 “경제과학국장”을 각각 “투자통상본부장”으로 한다.

⑧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기업지원과장”을 “투자유치팀장”으로 한다.

⑨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기업지원과장”을 “투자유치팀장”으로, “노사협력담당사무관”을 “노사협력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⑩대전광역시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기업지원과장”을 “기업지원팀장”으로 한다.

⑪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기업지원과장”을 “투자유치팀장”으로 한다.

⑫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담당과장”을 “담당팀장”으로 한다.

⑬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44조중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차치행정과장”으로, 제32조제3항중 “문화체육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⑭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실·국·과”를 “실·국·본부”로 한다.

⑮대전광역시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제6조제4항, 제7조, 제8조,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중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시민봉사실장”으로 한다.

별표 2중 “실·국·직속기관·사업소·공사·공단(전용)”을 “실·국·본부·직속기관·사업소·공사·공단(전용)”으로 한다.

⑯대전광역시시민장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행정지원과장”을 “차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⑰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3호중 “실·국·단·본부장”을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⑱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⑲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회계과장”을 “회계계약과장”으로 한다.

⑳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담당관·과”를 “담당관·과·팀·실·단”으로, 제28조제2항 본문중 “회계과”를 “회계계약과”로 한다.

㉑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문화예술담당과장”을 “관광문화재과장”으로 한다.

㉒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문화예술과장”을 “관광문화재과장”으로 한다.

㉓대전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중 “문화예술과장”을 “관광문화재과장”으로 한다.

㉔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담당관·과”를 “담당관·과·팀·실·단”으로 한다.

㉕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 및 제19조제1항제1호중 “문화체육국장”을 각각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㉖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체육청소년과장”을 “체육지원과장”으로 한다.

㉗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차치행정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㉘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10제1항중 “환경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㉙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㊱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중 “건설재해복구과장”을 “민방위방재과장”으로 한다.

㊲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실·국장(소방본부장을 포함한다)”을 “실·국장(본부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㊳대전광역시외국어강사채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제6조중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을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㊴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4조제1항중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을 각각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각각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한다.

[별표 1]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인력개발과	1.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사무처내 전보권 2.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의 신규임용·전보·휴직·면직 등의 임용권 전반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지방자치법」 제83조	의회사무처장 〃	

소속기관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인력개발과	1. 4급 지방공무원 휴직 및 복직 2. 5급 지방공무원에 대한 다음 권한 가. 휴직 및 복직 나. 보직 및 전보 다. 징계의결요구 라. 근무성적평정 3. 6급 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다음 권한 가. 임용 (별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 신규 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파면 및 해임) 나. 보직 다. 호봉 확정 및 승급 라. 징계의결 요구 및 처분 마. 근무성적 평정, 확인 4. 인사위원회 설치·운영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같은 법 제6조· 제63조· 제65조 · 같은 법 제30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26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76조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9조의2· 제30조의4· 제38조· 제62조· 제65조의3· 제70조 · 같은 법 제30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 · 「지방공무원법」 제7조	상수도사업 본 부 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인력개발과	5. 지방5급 이하 공무원의 기관내 전보권 6. 지방6급 이하 공무원의 소내 전보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지방공무원법」 제6조	공무원교육원장 사업소장 및 직속기관장	
토지정보과	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허가취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 제25조	사업소장 및 직속기관장	
푸른도시과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보문산, 세천, 가양, 계족산공원에 한한다. 다만, 계족산공원중 장동 산림욕장 구역은 제외한다) 가. 녹지활용계약 나. 녹화계약 다.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라.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위탁 및 공고 마.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및 공고 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사. 겸용공작물의 관리 아.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자. 원상회복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제25조	공원관리 사업소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푸른도시과	차.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허가	· 같은 법 제27조	공원관리 사업소장	
	카. 매수대상토지의 매수 및 협의에 의한 토지매수	· 같은 법 제29조 · 제30조 · 제32조		
	타. 도시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등	· 같은 법 제33조		
	파. 입장료 등의 징수 및 점용료의 부과 · 징수	· 같은 법 제40조 · 제41조		
	하. 점용료의 강제징수	· 같은 법 제43조		
	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청문	· 같은 법 제45조 · 제47조		
	너.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 보상	· 같은 법 제46조		
	더. 도시공원대장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대장 작성 · 보관	· 같은 법 제51조		
	러. 과태료 부과 · 징수	· 같은 법 제56조		
	2. 둔산대공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수목원관리 사업소장	
	가. 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 위탁 및 공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다.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인가 · 관리위탁 및 공고	· 같은 법 제21조		
	라.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 조치	· 같은 법 제22조		
	마. 겸용공작물의 관리	· 같은 법 제23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푸른도시과	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원상회복 사. 공원 등의 입장료, 점용료 징수 및 강제징수 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청문 자.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차. 도시공원대장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대장 작성·보관 카.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4조·제25조 · 같은 법 제40조·제41조·제43조 · 같은 법 제45조·제47조 · 같은 법 제46조 · 같은 법 제51조 · 같은 법 제56조	수목원관리사업소장	
운송주차관리과	1. 건설기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기계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수리, 등록말소 나. 건설기계 등록원부의 관리 다.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 등의 통지 라.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부착 마.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반납 바. 건설기계 등록번호 새김명령 사.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아.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5조·제6조 · 같은 법 제7조 · 같은 법 제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같은 법 제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제44조 ·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차량등록사업소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운송주차 관 리 과	<p>2. 자동차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멸실의 경우 처리와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열람신청의 처리</p> <p>나. 신규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재교부포함) 및 등록의 거부</p> <p>다. 변경등록의 처리</p> <p>라. 이전등록의 처리</p> <p>마. 말소등록에 관련된 사항</p> <p>바. 압류등록</p> <p>사. 자동차 등록번호의 부여</p> <p>아. 임시운행의 허가</p>	<p>· 「자동차관리법」 제7조</p> <p>·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p> <p>· 같은 법 제8조·제9조·제18조제2항</p> <p>·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제3호</p> <p>· 같은 법 제11조</p> <p>·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5호</p> <p>· 같은 법 제12조</p> <p>·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6호</p> <p>· 같은 법 제13조(동조 제8항·제9항 제외)</p> <p>·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7호·제9호</p> <p>· 같은 법 제14조</p> <p>·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0호</p> <p>· 같은 법 제16조</p> <p>·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1호</p> <p>· 같은 법 제27조</p> <p>·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7호</p>	차량등록 사업소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운송주차 관 리 과	<p>자.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p> <p>3. 과태료 부과·징수</p> <p>4.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 또는 변경 신고</p>	<p>· 같은 법 제28조</p> <p>·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8호</p> <p>·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5호</p> <p>·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p>	차량등록 사업소장	
도 로 과	<p>1. 도시계획상 폭 20m 이상의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자치구청장 위임사항은 제외)</p> <p>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 (사업소에서 인·허가한 경우에만 함)</p> <p>나.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p> <p>다. 도로의 사용 개시</p> <p>라.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p> <p>마.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p> <p>바. 부대공사의 시행</p> <p>사. 공공단체등에 대한 도로수선공사 시행 및 유지명령</p> <p>아.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허가 및 준공검사</p> <p>자. 도로대장의 작성 보관·관리</p> <p>차.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및 준공검사(다만, 보도구간은 제외)</p> <p>카. 도로공사계획의 공고</p>	<p>· 「도로법」 제6조</p> <p>· 같은 법 제24조</p> <p>· 같은 법 제28조</p> <p>· 같은 법 제30조</p> <p>· 같은 법 제31조</p> <p>· 같은 법 제32조</p> <p>· 같은 법 제33조</p> <p>· 같은 법 제34조</p> <p>· 같은 법 제38조</p> <p>· 같은 법 제40조</p> <p>· 같은 법 제40조</p>	건설관리 본 부 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도 로 과	타. 점용공사의 대행	· 같은 법 제42조	건설관리 본 부 장	
	파. 원상회복의 확인	· 같은 법 제45조		
	하. 도로공사 시행을 위한 토지등의 사용 또는 수용 등	· 같은 법 제49조의2		
	거.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 같은 법 제52조		
	너. 도로의 통행금지 및 제한 명령	· 같은 법 제53조		
	더. 차량의 운행제한(단속) 및 운행의 허가(폭 20m 미만의 도로 포함)	· 같은 법 제54조		
	러. 도로등에의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 같은 법 제54조의6		
	머. 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2조		
	버. 타공작물에 관한 도로공사 및 유지 비용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3조		
	서.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4조		
	어. 부대공사 비용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5조		
	저.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부담하는 수선, 유지비용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9조		
	처.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및 조치 명령	· 같은 법 제74조		
	커. 공익을 위한 처분	· 같은 법 제75조		
	터. 도로에 관한 사항 조사	· 같은 법 제76조의2		
	피. 수수료의 징수	· 같은 법 제77조의2		
	허. 부담금등의 강제 징수	· 같은 법 제78조		
	고. 과오납금의 반환	· 같은 법 제78조의2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도 로 과	<p>노. 과태료의 부과·징수</p> <p>2. 폭 20m 이상 교량(차도육교포함) 및 터널에 대한 다음의 사항 (폭 20m 미만 교량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1, 2종 시설물은 포함, 곤룡터널은 제외)</p> <p>가. 신설, 개축,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p> <p>나. 안전점검실시에 관한 사항</p> <p>다. 충격흡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p> <p>3. 도로의 부속물중 다음의 권한</p> <p>가. 지하차도 : 구체안전점검실시, 포장관리, 충격흡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p> <p>나. 가도교 : 포장관리(조인트포함)</p>	<p>· 같은 법 제86조의2</p> <p>· 같은 법 제3조·제24조</p> <p>· 같은 법 제39조</p>	건설관리 본 부 장	
도시계획과	<p>1. 건설사업의 지장물 및 용지 보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조사</p> <p>나. 보상금 지급</p> <p>다. 손실보상금 보상</p>	<p>·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p> <p>· 같은 법 제40조</p> <p>· 같은 법 제61조</p>	건설관리 본 부 장	

자치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경제정책과	1.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2. 가격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3. 권장소비자 가격 등의 표시 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검사 결과 불합격품에 대한 조치 5.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일반·용제 대리점 및 부생연료유 판매업은 제외) 가. 등록·신고 및 변경등록·신고 수리 나. 조건부 등록 및 취소 다.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라. 등록 취소 및 사업의 정지 명령 마. 과징금 부과·징수 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사. 보고 및 검사 아. 청문 자. 수수료 차. 과태료 부과·징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제29조 · 「소비자기본법」 제86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 제5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제12조 · 같은 법 제13조 제3항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제30조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41조 · 같은 법 제49조	구 청 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경제정책과	<p>6.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대리점은 제외)</p> <p>가. 등록·조건부등록 및 변경등록 등 수리</p> <p>나. 등록의 취소 등</p> <p>다. 과징금 부과·징수</p> <p>라. 보고 및 검사</p> <p>마. 청문</p> <p>바. 수수료</p> <p>사. 과태료 부과·징수</p> <p>7.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와 관련 다음의 권한</p> <p>가. 사업의 허가 등</p> <p>나. 허가의 기준</p> <p>다. 사업휴지 등의 신고</p> <p>라. 사업의 승계</p> <p>마. 허가의 취소 등</p> <p>바. 과징금의 부과·징수</p> <p>사. 안전관리규정 승인, 변경명령</p> <p>아.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등</p> <p>자. 위해방지 등의 조치</p>	<p>·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p> <p>· 같은 법 제34조</p> <p>· 같은 법 제35조</p> <p>· 같은 법 제38조</p> <p>· 같은 법 제40조</p> <p>· 같은 법 제41조</p> <p>· 같은 법 제49조</p> <p>·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제3항</p> <p>·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p> <p>· 같은 법 제6조</p> <p>· 같은 법 제7조제3항</p> <p>· 같은 법 제8조제1항</p> <p>·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p> <p>· 같은 법 제10조제4항</p> <p>·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5항·제6항</p> <p>· 같은 법 제22조제2항</p>	구 청 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비고
경제정책과	차. 보고·조사 등 카. 청문 타.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8.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개선·과기·수거명령 등 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관한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 9. 계량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계량기 제작업의 등록 등 (계량증명업에 한함) 나.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등의 제작 및 수입내용 기재서류 접수 다. 계량기의 자체수리 라. 검사에 관한 사항 마. 정기검사의 증인 바. 보고 및 검사 등 사. 개선명령 아.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계량증명업에 한함) 자. 청문 차.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5조제4항 · 같은 법 제36조의2 · 같은 법 제48조제4항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8조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제18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33조 · 같은 법 제34조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제44조제4항 · 같은 법 제51조	구청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경제정책과	<p>10.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p> <p>나. 승강기의 운행정지 명령</p> <p>다. 승강기관리주체에 대한 검사</p> <p>라. 과태료 부과·징수</p> <p>1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p> <p>나. 과태료의 부과·징수</p>	<p>·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4항</p> <p>· 같은 법 제8조제2항</p> <p>· 같은 법 제21조제4항 제4호</p> <p>· 같은 법 제28조</p> <p>·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p> <p>· 같은 법 제41조</p>	구 청 장	
농업유통과	<p>1. 가축방역에 관한 보고</p> <p>2.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허가 및 허가증 교부</p> <p>나. 허가사항 변경</p> <p>다. 허가증의 재교부 및 갱신</p> <p>라. 관리약사 변경신고 수리</p> <p>마. 보고와 검사 등</p>	<p>·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1조</p> <p>· 「약사법」 제35조 제2항 및 제37조</p> <p>·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0조</p> <p>· 「약사법」 제35조 제2항</p> <p>·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4조</p> <p>· 같은 규칙 제25조</p> <p>· 같은 규칙 제20조 제4항</p> <p>· 「약사법」 제64조</p>	구 청 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농업유통과	바. 폐기명령 등 사. 개수명령 아.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자. 청 문 차. 과징금 부과·징수 카. 과태료 부과·징수 3. 농업기반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제외) 가.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나.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다. 농업기반시설의 폐지승인 4. 토지소유주가 시행하는 개간 등 농업 생산기반사업에 관한 다음 의 권한 가. 사업시행의 인가·통지·고시 및 시행계획의 변경승인 나. 준공검사·통지 다. 사업시행 인가 및 변경승인 취소 라. 청문	· 같은 법 제65조 · 같은 법 제67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69조의2 · 같은 법 제71조의3 · 같은 법 제7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 · 「농어촌정비법」 제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 20조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 ·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 「농어촌정비법」 제12조 · 같은 법 제94조 · 같은 법 제98조 · 같은 법 제98조의2	구 청 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농업유통과	5. 비료유통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비료판매업자의 경우에 한함) 가. 비료의 품질검사 나.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 다. 감독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 「비료관리법」 제18조 · 같은 법 제19조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구 청 장	
투자유치팀	1. 노동조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설립·해산신고 수리 및 신고증 교부 나. 노동조합 설립신고 등의 보완 요구 및 통보 다. 노동조합의 변경신고서 수리 및 변경신고증 교부 라.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 마. 임시총회 소집 등의 소집권자 지명 및 통보 바.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중지명령 및 통보 사. 자료제출의 요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 제2조·제2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같은 법 제18조·제28조·제36조·제42조 · 같은 법 제1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같은 법 제21조·제4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2조 · 같은 법 제27조	구 청 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투자유치팀	아. 단체협약의 신고수리 및 시정 명령·통보 자.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 및 통보 차. 쟁의행위의 신고수리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고수리 카. 직장폐쇄 신고수리 타. 폭력행위 등의 신고수리 파.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9조 · 같은 법 제4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같은 법 제9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구 청 장	
기업지원팀	1. 산업단지내 시유행정재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허가 나. 대장 및 증서 보존 다. 재산관리 2. 염제조업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염전개발 및 염제조업 허가 및 변경 나. 허가의 취소 등 다. 청 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 같은 법 제44조제1항 · 같은 법 제44조제2항 · 「염관리법」 제3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24조	구 청 장	
인력개발과	1. 소속공무원에 대한 Ⅱ·Ⅲ급 비밀취급인가 권한	· 「보안업무규정」 제7조제2항	구 청 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토지정보과	1. 시유잡종재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재산의 합필신청 및 분필 및 기타 시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나. 제 대장 및 증서 보존관리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4조·제55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구 청 장	
관 광 문화재과	1.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유흥 음식점업의 지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정증교부·지정사항의 변경 및 지정증의 재교부 나. 양수, 합병, 지위승계, 휴업, 폐업의 신고 수리 다. 지정취소, 사업정지, 개선명령 라. 과징금 부과·징수 마. 청문 바. 보고 및 검사 사. 과태료 부과·징수 2. 문화재 수리 3. 전통사찰의 등록 및 변경등록 4.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서의 다음의 권한 가. 경내지에서의 동산 또는 부동산의 대여·담보의 제공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 「관광진흥법」 제8조 · 같은 법 제33조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제72조 · 같은 법 제73조 · 같은 법 제81조 · 「문화재보호법」 제18조·제58조 ·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제4항 · 같은 법 제6조제2항제1호	구 청 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관 광 문화재과	<p>나. 건조물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철거</p> <p>다.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p> <p>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마. 「산지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안에 위치한 전 통사찰의 경내지 안에서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p>	<p>·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p> <p>· 같은 법 제6조제2항제3호</p> <p>· 같은 법 제6조제2항제4호</p> <p>· 같은 법 제6조제2항제5호</p>	구 청 장	
복지정책과	1. 의료급여기금관리공무원 임명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구 청 장	
보건위생과	<p>1.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 허가 및 변경허가</p> <p>나. 허가증 교부</p> <p>다. 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허가</p> <p>라. 보고 및 검사 등</p> <p>마. 업무개시 명령 등</p> <p>바. 폐기명령 등</p> <p>사. 개수명령</p> <p>아.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p>	<p>· 「약사법」 제35조</p> <p>·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56조</p> <p>·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p> <p>· 같은 법 제64조</p> <p>· 같은 법 제64조의2</p> <p>· 같은 법 제65조</p> <p>· 같은 법 제67조</p> <p>· 같은 법 제69조</p> <p>·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p>	구 청 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보건위생과	자. 청 문 차. 과징금 부과·징수 카. 과태료 부과·징수 2. 제1군 전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예방상 필요한 조치 나. 강제처분 3. 제3군 전염병에 관한 진료비 징수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및 변경 나. 허가증 및 지정서 교부 및 재교부 다. 폐업, 휴업, 재개업신고 수리 라. 마약류취급자가 사망한 때, 무능력자가 된 때, 법인이 해산한 때의 신고수리 마.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교부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취급 의료업자에 한함) 바. 사고마약류의 처리 사.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 같은 법 제69조의2 · 같은 법 제71조의3 · 같은 법 제7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전염병예방법」 제39조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52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같은 법 제7조 · 같은 법 제8조제2항 · 같은 법 제8조제3항 · 같은 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같은 법 제1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같은 법 제13조	구 청 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보건위생과	아.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및 향 정신성의약품 판매승인 자. 허가등의 제한 차. 출입·검사와 수거 카. 폐기명령 등 타. 업무보고, 장부 및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명령 파.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하. 청 문 거. 과징금 부과·징수 너.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에 따 른 협의 6. 약업사의 영업소 이전허가	· 같은 법 제26조 · 같은 법 제37조 · 같은 법 제41조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3조 · 같은 법 제44조 · 같은 법 제45조 · 같은 법 제4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같은 법 제5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약사법 시행규칙」(제933호)부 칙 제4조	구 청 장	
환경정책과	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기오염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나. 연료의 제조·공급·판매·사 용 등의 규제 및 사용승인 다. 비산먼지의 규제 라. 운행차 수시 점검 (다만, 필요시 시장이 수시 점 검할 수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2 · 같은 법 제26조·제27조 · 같은 법 제28조 · 같은 법 제37조	구 청 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환경정책과	<p>마. 운행차의 개선명령, 사용정지 명령 및 개선결과 보고의 수리 (다만, 시장이 점검한 차량은 제외한다)</p> <p>바. 배출시설 설치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p> <p>사. 청문</p> <p>아. 과태료 부과·징수</p> <p>2. 다중이용시설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개선명령</p> <p>나. 보고 및 검사 등</p> <p>다. 과태료 부과·징수</p>	<p>· 같은 법 제38조</p> <p>· 같은 법 제49조제8호의2</p> <p>· 같은 법 제52조</p> <p>· 같은 법 제59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2항제6호·제9호·제11호</p> <p>·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p> <p>· 같은 법 제13조</p> <p>· 같은 법 제16조</p>	구 청 장	
수질관리과	<p>1. 먹는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출입·검사·수거 등</p> <p>나. 지도 및 개선명령</p> <p>다. 폐기처분 등</p> <p>2.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오염원인자에 대한 토양오염 방지 조치명령 등</p> <p>나. 과태료 부과·징수</p> <p>3. 공공수역오염의 방제조치 이행명령 및 대집행</p>	<p>· 「먹는물관리법」 제34조제1항</p> <p>· 같은 법 제36조제1항</p> <p>· 같은 법 제39조제1항</p> <p>·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p> <p>· 같은 법 제32조</p> <p>· 「수질환경보전법」 제5조제3항·제4항</p>	구 청 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수질관리과	4. 중수도설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중수도설치·운영 이행명령 나. 과태료 부과·징수	· 「하수도법」 제 26조제4항 · 같은 법 제80조	구 청 장	
푸른도시과	1. 산림 병해충등 예방 및 구제조치 명령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보문산, 세천, 가양, 둔산대공원, 계족산 공원을 제외한다. 다만, 계족산공원중 장동산림욕장 구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녹지활용계약 나. 녹화계약 다.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라. 도시공원의 조성계획(변경)입안 및 결정 (시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입안할 수 있다.) (1) 근린공원 입안 (2) 소공원, 어린이공원 입안·결정·인가 (3) 주제공원(역사, 문화, 수변, 묘지, 체육공원 등) 입안 마.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제1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구 청 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푸른도시과	바. 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 (시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할 수 있다) 사.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위탁 및 공고 아.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인가·관리위탁 및 공고 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차. 점용공작물의 관리 카.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타. 원상회복 파.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허가 하. 매수대상토지의 매수 및 협의에 의한 토지매수 거. 도시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등 너. 녹지의 설치 및 관리 더. 특정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관리 러. 녹지의 점용허가 등 며. 입장료 등의 징수 및 점용료의 부과·징수 버. 점용료의 강제징수 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청문	· 같은 법 제19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제25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29조·제30조·제32조 · 같은 법 제33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37조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제40조·제41조 · 같은 법 제43조 · 같은 법 제45조·제47조	구 청 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푸른도시과	<p>어.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 보상</p> <p>저. 도시공원대장 및 도시자연공원 구역 관리대장 작성·보관</p> <p>처. 과태료 부과·징수</p> <p>3. 광장시설 유지관리 (경관광장 등 공원녹지 기능을 하는 광장에 한한다)</p>	<p>· 같은 법 제46조</p> <p>· 같은 법 제51조</p> <p>· 같은 법 제56조</p> <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p>	구 청 장	
자원순환과	<p>1. 다른 사람의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신고 및 변경 신고수리</p> <p>2. 폐기물처리업중 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 종합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지정폐기물은 제외함)</p> <p>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p> <p>나. 허가증 교부 및 재교부</p> <p>다.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p> <p>라. 과징금 부과·징수</p> <p>마.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수리</p> <p>바.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에 관한 사항</p>	<p>·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제1항·제2항</p> <p>· 「폐기물관리법」 제26조</p> <p>·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p> <p>·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p> <p>·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19조</p> <p>· 같은 법 제28조</p> <p>· 같은 법 제29조</p> <p>·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p> <p>· 같은 법 제32조</p> <p>·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p> <p>· 같은 법 제42조</p> <p>·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p>	구 청 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자원순환과	<p>사. 폐기물처리에 관한 보고·검사 등</p> <p>아.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p> <p>자. 법령 또는 명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청문에 관한 사항</p> <p>3. 과태료 부과·징수</p> <p>4. 폐기물의 보관에 관한 사항</p> <p>5. 건설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변경허가, 허가의 취소 등</p> <p>나.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승인</p> <p>다. 건설폐기물의 채위탁 금지</p> <p>라. 과징금의 처분 등</p> <p>마.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변경승인) 및 신고(변경신고)</p> <p>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신고</p>	<p>· 같은 법 제43조</p> <p>·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45조</p> <p>· 같은 법 제43조의2</p> <p>·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내지 제26조의5</p> <p>· 같은 법 제56조·제57조</p> <p>·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p> <p>· 같은 법 제63조</p> <p>·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8조</p> <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2조·제25조</p> <p>·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p> <p>· 같은 법 제23조</p> <p>· 같은 법 제26조</p> <p>·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p> <p>· 같은 법 제27조</p> <p>· 같은 법 제28조</p>	구 청 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자원순환과	<p>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개선, 사용중지, 폐쇄 명령 등)</p> <p>아.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p> <p>자. 권리·의무의 승계 등</p> <p>차. 휴업·폐업 등의 신고 및 보고 검사 등</p> <p>카.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p> <p>타. 방치폐기물의 처리</p> <p>파.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 및 처리이행 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p> <p>하. 청문</p>	<p>· 같은 법 제29조</p> <p>· 같은 법 제30조제3항</p> <p>· 같은 법 제31조</p> <p>· 같은 법 제33조·제34조</p> <p>· 같은 법 제41조</p> <p>·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조</p> <p>· 같은 법 제43조</p> <p>· 같은 법 제45조·제46조</p> <p>· 같은 법 제57조</p>	구 청 장	
생태하천 사업 단	<p>1. 지방1·2급 하천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수리</p> <p>나. 하천대장의 작성·보관</p> <p>다.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p> <p>라. 하천유수의 사용·관리</p> <p>마. 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p> <p>바. 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 (다만, 관리청 지원공사는 사전 시행계획 협의 및 준공승인)</p> <p>사.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시행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p> <p>아.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준공인가</p>	<p>· 「하천법」 제4조 제2항</p> <p>· 같은 법 제14조</p> <p>· 같은 법 제15조</p> <p>· 같은 법 제21조</p> <p>· 같은 법 제27조</p> <p>· 같은 법 제28조</p> <p>· 같은 법 제30조</p> <p>· 같은 법 제31조</p>	구 청 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생태하천 사 업 단	자. 하천의 점용허가 등	· 같은 법 제33조	구 청 장	
	차. 점용공사의 대행	· 같은 법 제36조		
	카. 점용료 등의 징수	· 같은 법 제38조		
	타. 점용료등의 감면	· 같은 법 제39조		
	파.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 같은 법 제40조		
	하.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 같은 법 제58조		
	거. 과오납금의 반환	· 같은 법 제59조		
	너.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 같은 법 제64조		
	더. 공익을 위한 처분 등	· 같은 법 제65조		
	러. 하천 감시원 임명 등	· 같은 법 제68조		
	며.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 및 출입 등	· 같은 법 제69조		
	버. 하천관리를 위한 타인의 토지 에의 출입 등	· 같은 법 제70조		
	서. 낚시등의 금지구역 지정등	· 같은 법 시행령 제 50조		
	어. 하천의 사용금지 등	· 같은 법 제72조		
	저. 원상회복 의무면제 등	· 같은 법 제73조		
	처.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 같은 법 제74조		
	커.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 같은 법 제75조		
	터. 하천공사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	· 같은 법 제76조		
	퍼. 허가수수료 징수·감면	· 같은 법 제80조		
	허. 청문	· 같은 법 제81조		
고.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88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생태하천 사 업 단	<p>2. 하천 국유화에 따른 조치 (지목변경 등기말소의 촉탁, 관리 청명칭 첨기 등)</p> <p>3. 국가하천 및 지방¹급 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보상대상자의 결정</p> <p>나. 보상계획의 수립</p> <p>다.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p> <p>라. 보상금액의 산정</p> <p>마. 보상금 지급의 통지</p> <p>바. 편입토지의 점용 및 사용</p> <p>4. 잡종재산(폐천부지)의 관리 및 처분</p>	<p>· 같은 법 제3조</p> <p>· 「하천구역편입토 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령」 제5조</p> <p>· 같은 법 시행령 제 6조</p> <p>·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p> <p>· 같은 법 시행령 제 8조</p> <p>· 같은 법 시행령 제 9조</p> <p>·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p> <p>· 「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법」 제28조</p>	구 청 장	
운송주차 관 리 과	<p>1.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에 관한 다 음의 권한</p> <p>가. 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 및 인가 신청기간의 연장</p> <p>나. 공사완료 시설 확인</p> <p>다. 사용개시일 연장</p> <p>라. 사용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p>	<p>·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39조제 1항 내지 제3항</p> <p>· 같은 법 제39조제 4항</p> <p>· 같은 법 제40조</p> <p>· 같은 법 제41조</p>	구 청 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비고
운송주차 관 리 과	<p>마. 시설사용료의 인가 및 변경 인가</p> <p>바. 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 및 시정명령</p> <p>사. 금지행위에 대한 중지명령</p> <p>아. 위치·규모·구조·설비의 변 경인가</p> <p>자. 개선명령</p> <p>차. 사용명령</p> <p>카. 사업의 상속 및 양도, 양수, 법 인합병 신고의 수리</p> <p>타. 사업의 휴지·폐지허가</p> <p>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보 고·검사 등</p> <p>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및 유상임대허가</p> <p>4.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 의 교부 열람신청 처리</p> <p>5. 자동차압류등록의 처리(다만, 구 청장의 촉탁에 한함)</p> <p>6. 건설기계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 같은 법 제42조</p> <p>· 같은 법 제43조제2 항·제3항</p> <p>· 같은 법 제43조제3 항</p> <p>· 같은 법 제45조</p> <p>· 같은 법 제46조</p> <p>· 같은 법 제47조</p> <p>· 같은 법 제50조</p> <p>· 같은 법 제50조</p> <p>·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7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제1항제6호</p> <p>·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3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52조</p> <p>· 「자동차관리법」 제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제2항제1호</p> <p>·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0호</p>	구 청 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운송주차 관 리 과	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및 면허 증교부 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취소· 정지 다. 건설기계조종사 신고수리 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재교부 마.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대장관리 바.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사. 건설기계소유자에 대한 보고· 검사 등 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의 반납 자. 청 문 차. 과태료 부과·징수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 같은 법 제28조 · 같은 법 제3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 같은 법 제34조의2 · 같은 법 제35조제 1항제1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44조	구 청 장	
도 로 과	1. 도시계획상 폭 20m 미만의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의 접수 나.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다.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 라. 도로구역의 결정, 변경 및 고시	· 「도로법」 제6조 · 같은 법 제23조의2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제25조	구 청 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도 로 과	마. 도로의 사용개시 및 폐지 바. 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 시행 및 유지명령 사.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아.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자. 부대공사의 시행 차. 공공단체등에 대한 도로 수선 공사 시행 및 유지명령 카. 비관리청의 공사 시행 허가 타. 도로대장의 작성보관·관리 파. 도로점용허가 하. 점용공사의 대행 거. 점용료 부과·징수 너. 원상회복의 확인 더. 비상재해시 필요 토지·가옥·공작물의 일시사용 및 토석·죽목, 기타 물건의 사용 또는 수용 러. 도로공사 시행을 위한 토지등의 사용 또는 수용 등 머.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버. 도로의 통행금지 및 제한 명령 서. 차량의 운행제한(단속) 어. 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의 부과·징수 저. 타공작물에 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의 부과·징수 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커. 부대공사비용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8조 · 같은 법 제29조 · 같은 법 제30조 · 같은 법 제31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33조 · 같은 법 제34조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3조 · 같은 법 제45조 · 같은 법 제49조 · 같은 법 제49조의2 · 같은 법 제52조 · 같은 법 제53조 · 같은 법 제54조 · 같은 법 제62조 · 같은 법 제63조 · 같은 법 제64조 · 같은 법 제65조	구 청 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도 로 과	<p>터.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부담하는 수선·유지비용의 부과·징수</p> <p>피.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및 조치명령</p> <p>허. 점용허가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p> <p>고. 청문실시</p> <p>노. 도로에 관한 사항 조사 등</p> <p>도. 수수료의 징수</p> <p>로. 부담금등의 강제징수</p> <p>모. 과오납금의 반환</p> <p>보.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p> <p>소. 변상금의 부과·징수</p> <p>오. 과태료의 부과·징수</p> <p>2. 도시계획상 폭 20m 이상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보도의 개축, 수선 등 유지관리 및 굴착 허가(자전거도로 포함)</p> <p>나. 도로점용허가(다만, 굴착을 수 반하는 점용허가는 제외)</p> <p>다. 점용료의 부과·징수</p> <p>라. 차량의 운행제한(단속)</p> <p>마. 적치물의 제거, 보관, 관리 등</p> <p>바. 변상금의 부과·징수</p> <p>3. 폭 20m 미만 교량(차도육교 포함) 및 터널에 대한 다음 사항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은 제외)</p> <p>가. 신설, 개축,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p>	<p>· 같은 법 제69조</p> <p>· 같은 법 제74조</p> <p>· 같은 법 제75조</p> <p>· 같은 법 제75조의2</p> <p>· 같은 법 제76조의2</p> <p>· 같은 법 제77조의2</p> <p>· 같은 법 제78조</p> <p>· 같은 법 제78조의2</p> <p>· 같은 법 제80조</p> <p>· 같은 법 제80조의2</p> <p>· 같은 법 제86조의2</p> <p>· 같은 법 제3조·제23조</p> <p>· 같은 법 제40조</p> <p>· 같은 법 제43조</p> <p>· 같은 법 제54조</p> <p>· 같은 법 제54조의7</p> <p>· 같은 법 제80조의2</p> <p>· 같은 법 제3조·제23조</p>	구 청 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도 로 과	<p>나. 안전점검실시에 관한 사항</p> <p>다. 충격흡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4. 도로의 부속물중 다음의 권한</p> <p>가. 가로등의 신설, 보수 등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p> <p>나. 지하차도 배수·조명·전기·지하재방송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타일세척포함)</p> <p>다. 지하보도 개축, 수선 등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p> <p>라. 가도교의 배수·조명·전기·안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마. 터널의 배수·조명·전기·지하재방송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바. 지하상가 출입구 및 지하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시설 관리공단 위탁시설 제외)</p> <p>사. 보도육교 개축, 수선 등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p> <p>5. 폭 20m 미만 도로의 도로편입용 지보상(매수 및 소유권이전)</p> <p>6. 기부재산(지하상가) 무상사용 허가</p> <p>7.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지목상 도로인 경우에 한함)</p>	<p>· 같은 법 제39조</p> <p>· 같은 법 제3조· 및 제23조</p> <p>· 같은 법 제3조· 제23조</p> <p>· 같은 법 제49조의 2 및 제79조</p> <p>·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p> <p>· 「도로법」 제40조</p> <p>·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p>	구 청 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도시계획과	<p>1. 용도폐지 되는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에 따른 의견 협의</p> <p>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협의</p> <p>3. 개발행위 허가, 절차, 기준, 이행 담보, 인·허가 등의 의제, 준공검사,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다만, 시장이 인가한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한 허가 및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허가는 위임하지 아니한다)</p> <p>4.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p> <p>가. 다음의 도시관리계획입안권,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및 시행자 지정고시,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와 고시(시 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직접 입안 또는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시장이 할 수 있다)</p> <p>(1) 도로(폭 20m 미만의 도로)</p> <p>(2) 하수도(종말처리장 제외)</p> <p>(3) 공공청사(국가기관의 청급이상 및 광역시 단위기관의 청사는 제외)</p> <p>(4) 도서관(국가 및 광역시 단위기관의 도서관은 제외)</p> <p>(5) 공원(어린이공원에 한함)</p> <p>(6) 학교(대학은 제외)</p> <p>(7) 사회복지시설</p> <p>(8) 장례식장</p>	<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p> <p>·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p> <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7조·제58조·제60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64조</p> <p>·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59조제5항</p> <p>· 같은 법 제24조·제29조·제43조·제86조·제88조·제90조·제91조</p>	구 청 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비고
도시계획과	<p>(9) 광장(폭 20m 미만의 도로에 접한 광장 및 건축물 부설 광장에 한함)</p> <p>(10) 주차장</p> <p>(11) 궤도</p> <p>(12) 삭도</p> <p>(13) 하천(「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에 한함)</p> <p>(14) 체육시설(골프장 제외)</p> <p>(15) 관망탑</p> <p>(16) 공공 공지</p> <p>(17) 시장(도매시장은 제외)</p> <p>(18) 수도(광역계획과 관련된 정수장은 제외)</p> <p>(19) 도축장</p> <p>(20) 전기공급설비(변전소에 한함)</p> <p>(21) 저수지</p> <p>(22) 방풍설비</p> <p>(23) 가스공급설비(정압기 및 배관설비,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저장소)</p> <p>(24) 방수설비</p> <p>(25) 방화설비</p> <p>(26) 사방설비</p> <p>(27) 방조시설</p> <p>(28) 연구시설</p>		구 청 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비고
도시계획과	<p>(29) 문화시설</p> <p>(30)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p> <p>(31) 우수지 시설</p> <p>(32) 공공직업훈련시설</p> <p>(33) 폐차장</p> <p>(34)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p> <p>(35) 청소년수련시설</p> <p>(36) 공영차고지</p> <p>(37)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유류 저장시설 규모 6,000 ℓ 미만에 한함)</p> <p>(38) 폐기물처리시설(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제외)</p> <p>(39) 방송·통신시설</p> <p>나.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설명서 작 성(자치구청장에게 도시관리계 획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 시설에 한함)</p> <p>다.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자치구청장에게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 설에 한함)</p> <p>라. 2개구 이상에 걸친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 에 대한 시행 및 시행자 지정 고시, 실시계획인가 및 공람· 공고와 고시(관계 자치구청장이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 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처리 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p>	<p>· 같은 법 제25조</p> <p>· 같은 법 제28조</p> <p>· 같은 법 제24조· 제25조·제28조· 제86조·제88조· 제90조·제91조</p>	구 청 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도시계획과	<p>마.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의 고시(자치구청장에게 도시관리계획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에 한함)</p> <p>바.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고시(자치구청장에게 도시관리계획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에 한함)</p> <p>사.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자치구청장에게 도시관리계획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에 한함)</p> <p>아.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및 공고(자치구청장에게 도시관리계획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에 한하며, 계획수립 및 공고를 했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공고문과 이에 관한 조서를 보고하여야 함)</p> <p>자. 기타 다른법령에 의거 의제처리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사완료 공고</p> <p>차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준공검사필증 교부 및 공사완료 공고(자치구청장에게 도시관리계획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에 한함)</p> <p>카. 기초조사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에 따른 타인의 토지출입허가에 관한 사항(시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p> <p>5. 전문건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등록 및 등록증 교부</p>	<p>· 같은 법 제32조</p> <p>· 같은 법 제33조</p> <p>· 같은 법 제47조</p> <p>· 같은 법 제85조</p> <p>· 같은 법 제91조·제98조</p> <p>· 같은 법시행령 제100조·제102조</p> <p>· 같은 법 제98조</p> <p>· 같은 법 제130조</p> <p>·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p>	구청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도시계획과	<p>나. 기재사항 변경수리</p> <p>다. 양도, 법인의 합병, 상속신고 수리</p> <p>라. 등록대장의 작성·보관</p> <p>마.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등</p> <p>바. 시정명령 등</p> <p>사.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징수</p> <p>아. 등록 말소 등</p> <p>자. 청문</p> <p>차. 과태료 부과·징수</p>	<p>· 같은 법 제9조의2 제2항</p> <p>· 같은 법 제17조</p> <p>·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p> <p>· 같은 법 제49조</p> <p>· 같은 법 제81조</p> <p>· 같은 법 제82조</p> <p>· 같은 법 제83조</p> <p>· 같은 법 제86조</p> <p>· 같은 법 제101조</p>	구 청 장	
도시관리과	<p>1.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중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p> <p>가. 다음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권,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와 관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및 시행자 지정고시, 실시계획 인가 및 공고·공람과 고시(시 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직접 입안 또는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제외)</p> <p>(1) 도로(폭 20m 미만의 도로)</p> <p>(2) 하수도(종말처리장 제외)</p> <p>(3) 공공청사(국가 및 광역시 단위 기관의 청사는 제외)</p> <p>(4) 도서관(국가 및 광역시 단위 기관의 도서관은 제외)</p> <p>(5) 공원(어린이공원에 한함)</p>	<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9조·제30조·제43조·제86조·제88조·제90조·제91조</p>	구 청 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비고
도시관리과	<p>(6) 학교(대학은 제외)</p> <p>(7) 사회복지시설</p> <p>(8) 광장(폭 20m 미만의 도로에 접한 광장 및 건축물 부설 광장에 한함)</p> <p>(9) 주차장</p> <p>(10) 공공 공지</p> <p>(11) 시장(도매시장은 제외)</p> <p>(12) 수도(광역계획과 관련된 정수장은 제외)</p> <p>(13) 전기공급설비(변전소에 한함)</p> <p>(14) 가스공급설비(정압기 및 배관설비,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저장소)</p> <p>(15) 연구시설</p> <p>(16) 문화시설</p> <p>(17)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 시설</p> <p>(18) 우수지시설</p> <p>(19) 청소년수련시설</p> <p>(20) 공영차고지</p> <p>(21) 공공직업훈련시설</p> <p>(22) 하천(「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에 한함)</p> <p>(23) 운동장(골프장 제외)</p> <p>(24) 관망탑</p> <p>(25) 방풍설비</p> <p>(26) 방수설비</p> <p>(27) 방화설비</p> <p>(28)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유류 저장시설 규모 6,000 ℓ 미만에 한함)</p> <p>나.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설명서 작성(자치구청장에게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에 한함)</p>	<p>· 같은 법 제25조</p>	구 청 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도시관리과	<p>다. 2지구 이상에 걸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과 결정, 의견 청취,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시행자 지정고시, 실시계획인가 및 공람·공고와 고시(관계 자치구청장이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처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p> <p>라.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자치구청장에게 도시관리계획결정 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에 한함)</p> <p>마.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의 고시(자치구청장에게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 시설에 한함)</p> <p>바.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고시 (자치구청장에게 도시관리계획결정 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에 한함)</p> <p>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 검사, 준공검사필증교부 및 공사 완료 공고(자치구청장에게 도시 관리계획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 계획시설에 한함)</p> <p>아. 기초조사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에 따른 타인의 토지 출입허가에 관한 사항 (시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p> <p>2.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중 건축물 계획에 대한 다음의 권한</p> <p>가. 다음의 도시관리계획입안권,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고시 (시 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직접 입안하는 도시관리계획은 제외)</p> <p>(1)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에 관한 계획</p> <p>(2) 대문, 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색채에 관한 계획</p>	<p>· 같은 법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86조· 제88조· 제90조· 제91조</p> <p>· 같은 법 제28조</p> <p>· 같은 법 제32조</p> <p>· 같은 법 제33조</p> <p>· 같은 법 제98조</p> <p>· 같은 법 제130조</p> <p>· 같은 법 제24조· 제30조</p>	구 청 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도시관리과	<p>(3) 간판의 크기, 형태, 색채, 재질에 관한 계획</p> <p>(4)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p> <p>(5) 대지(필지)의 분할에 관한 계획</p> <p>나.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설명서 작성(자치구청장에게 도시관리계획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에 한함)</p> <p>다.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자치구청장에게 도시관리계획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에 한함)</p> <p>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의 고시(자치구청장에게 도시관리계획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에 한함)</p> <p>마.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고시(자치구청장에게 도시관리계획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에 한함)</p> <p>바. 기초조사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에 따른 타인의 토지출입허가에 관한 사항(시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p> <p>3.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한 권한</p> <p>4. 자치구청장에게 도시관리계획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관리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을 함에 수반되는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공공보행통로, 차량출입허용 및 불허구간, 공공조경 등의 조정이 필요한 계획의 권한</p>	<p>· 같은 법 제25조</p> <p>· 같은 법 제28조</p> <p>· 같은 법 제32조</p> <p>· 같은 법 제33조</p> <p>· 같은 법 제130조</p> <p>· 같은 법 제3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4항</p> <p>· 같은 법 제24조 · 제28조 · 제30조 · 제32조</p>	구청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도시관리과	<p>5. 대상면적 66만㎡ 미만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개발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구청장이 승인·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사업에 대한 「도시개발법」 의제사항과 관련된 다음의 권한 (다만, 시 계획과 연관하여 시장이 직접 입안 또는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제외함)</p> <p>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포함.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p> <p>나.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p> <p>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및 개발계획의 변경고시(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포함. 다만, 시장에 게 통보하여야 함)</p> <p>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변경</p> <p>마.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 개발사업시행자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신탁 체결에 관한 사항 승인</p> <p>바.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p> <p>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와 고시 [도시관리 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결정 및 변경결정과 지형도면의 고시 및 변경고시 포함. 다만, 인가전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p>	<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p> <p>· 「도시개발법」 제3조·제7조</p> <p>· 같은 법 제4조·제7조</p> <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p> <p>· 「도시개발법」 제9조</p> <p>· 같은 법 제11조</p> <p>· 같은 법 제12조</p> <p>· 같은 법 제13조</p> <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p> <p>· 「도시개발법」 제17조·제18조</p>	구청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도시관리과	<p>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시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p> <p>자.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승인</p> <p>차.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의 대금(선수금) 사전 징수 승인</p> <p>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수리</p> <p>타. 준공검사, 공사완료 공고, 보완 시공 명령</p> <p>파.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p> <p>하. 구청장이 시행자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비용부담 협의</p> <p>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권한</p> <p>너.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협의 등</p> <p>더.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처분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p> <p>6. 사업면적 66만㎡ 미만의 도시개발사업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의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p> <p>가. 다음의 도시관리계획입안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설치·관리와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및 시행자 지정고시,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와 고시(시 계획과 연관하여 시장이 직접 입안 또는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시장이 할 수 있다)</p>	<p>· 같은 법 제19조</p> <p>· 같은 법 제22조</p> <p>· 같은 법 제24조</p> <p>· 같은 법 제25조</p> <p>· 같은 법 제49조·제50조</p> <p>· 같은 법 제52조</p> <p>· 같은 법 제55조</p> <p>· 같은 법 제57조</p> <p>· 같은 법 제65조</p> <p>· 같은 법 제67조</p> <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9조·제30조·제43조·제86조·제88조·제90조·제91조</p>	구청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비고
도시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폭 20m 미만의 도로에 한함) (2) 하수도(종말처리장제외) (3) 공공청사(국가기관의 청급 이상 및 광역시단위 기관의 청사는 제외) (4) 도서관(국가 및 광역시 단위 기관의 도서관은 제외) (5) 공원(어린이공원에 한함) (6) 학교(대학은 제외) (7) 사회복지시설 (8) 장례식장 (9) 광장(폭 20m 미만의 도로에 접한 광장 및 건축물부설 광장에 한함) (10) 주차장 (11) 궤도 (12) 삭도 (13) 하천(「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에 한함) (14) 체육시설 (골프장 제외) (15) 관망탑 (16) 공공공지 (17) 시장 (도매시장 제외) (18) 수도(광역계획과 관련된 정수장은 제외) (19) 도축장 (20) 전기공급설비(변전소에 한함) (21) 저수지 (22) 방풍설비 (23) 가스공급설비(정압기 및 배관설비,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저장소) (24) 방수설비 (25) 방화설비 (26) 사방설비 (27) 방조설비 (28) 연구시설 		구 청 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도시관리과	<p>(29) 문화시설 (30)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31) 우수지 시설 (32) 공공직업훈련시설 (33) 폐차장 (34)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35) 청소년수련시설 (36) 공영차고지 (37)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유류저장시설 규모 6,000ℓ 미만 에 한함) (38) 폐기물처리시설(광역폐기물처리시설 제외) (39) 방송·통신시설</p> <p>나.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설명서 작성 (자치구청장에게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에 한함)</p> <p>다.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자치구청장에게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에 한함)</p> <p>라. 2개구 이상에 걸친 도시관리계획입안과 결정, 의견청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및 시행자 지정고시, 실시계획인가 및 공람·공고와 고시(관계 자치구청장이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처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p> <p>마.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의 고시(자치구청장에게 도시관리계획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에 한함)</p>	<p>· 같은 법 제25조</p> <p>· 같은 법 제28조</p> <p>· 같은 법 제24조·제25조·제28조·제86조·제90조·제91조</p> <p>· 같은 법 제32조</p>	구 청 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도시관리과	<p>바.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고시 (자치구청장에게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에 한함)</p> <p>사. 기초조사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에 따른 타인의 토지출입허가에 관한 사항(시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p> <p>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준공검사필증교부 및 공사완료 공고(자치구청장에게 도시관리계획결정 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에 한함)</p> <p>7. 사업면적 66만㎡ 미만의 도시개발사업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권한(도시계획 시설의 결정·변경은 위임된 시설에 한하며,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변경과 건폐율·용적율의 상향조정은 제외함)</p>	<p>· 같은 법 제33조</p> <p>· 같은 법 제130조</p> <p>· 같은 법 제98조</p> <p>· 같은 법 제24조·제25조·제29조·제30조</p>	구청장	
건축과	<p>1.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국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p> <p>가. 사업계획승인</p> <p>나. 감리자의 지정, 감리업무 지정 제한</p> <p>2.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착공 신고의 접수·승인취소</p> <p>3. 감리자교체 및 보고업무</p> <p>4. 보고·검사 등</p> <p>5.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p>	<p>· 「주택법」 제16조</p> <p>· 같은 법 제24조</p> <p>· 같은 법 제16조</p> <p>· 같은 법 제24조</p> <p>· 같은 법 제90조</p> <p>· 같은 법 제93조</p>	구청장	

심 사 보 고 서

2007년 4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3월 30일 대전광역시장
2. 회 부 일 자 : 2007년 3월 30일
3. 상 정 일 자 : 제16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7. 4. 16)
상정, 심사, 수정가결

II.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기획관 권혁돈)

1. 제안이유

조직개편 및 사무위임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신설·조정·삭제하고,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부서의 명칭을 행정지원과에서 인력개발과로 조정함(안 별표 1).
- 나.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부서 및 수임기관의 명칭을 조정하고, 개별법령의 개정에 맞춰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조정하고자 함(안 별표 2).
- 다. 조직개편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및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조정하고, 권한이양(장관 → 시장 또는 시장 → 구청장)된 위임사무는 신설 또는 삭제하고자 함(안 별표 3).

III.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한봉전)

본 조례안은 금년 1월 시행된 조직개편 및 사무위임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장, 사업소장 및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조정 또는 삭제하고, 소관부서를 변경하

며, 조직개편의 내용에 따라 부칙으로 33개의 다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임.

○ 본 개정 조례 안 검토결과

조직개편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일부사무 중 18개 정도의 관련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 된지 1년 이상 되는 시점에서 사업소장 및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임사항을 삭제하거나 위임 근거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적법성 및 조례 개정의 신속성 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조례개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조직개편 내용만을 반영한바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 조례는 내용 중 근거법령 등 다른 내용을 개정할 사항이 있어 개별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IV. 토 론 요 지 : 생 략

V. 질의답변요지 : 생 략

VI.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내용별첨)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04
----------	-----

제안연월일 : 2007. 4.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부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다른 조례의 개정에 있어 불필요한 조례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2개의 조례를 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대상에서 제외함(조례안 부칙 제2조).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2조 제7항 및 제8항을 삭제하고 제9항 내지 제33항을 제7항 내지 제31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p> <p>⑦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중 “경제과학국장”을 각각 “투자통상본부장”으로 한다.</p> <p>⑧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2항중 “기업지원과장”을 “투자유치팀장”으로 한다.</p> <p>⑨-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개정안과 같음)</p> <p>(삭제)</p> <p>(삭제)</p> <p>⑦- (개정안과 같음)</p>